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21년 12월 일
제 출 자 : 김영래, 전수곤, 배재만 구교강, 김성우, 도희재, 황숙희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「지방자치법」 인용 조문 변경(안 제1조)
나.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자율화 (안 제2조)
다. 부적절한 용어 정비(안 제5조, 제6조)

3. 조 례 안 : 붙 임

4. 입법예고기간 : 2021. 12. 17 ~ 12. 21

5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(2022. 1. 13. 시행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62조”를 “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71조”로 한다.
제2조제2항 중 “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”을 “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제5조제2항 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제6조의 제목 “(간사)”를 “(부위원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간사는”을 “부위원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71조 ----------.
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생 략)	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,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.	②----------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	<삭 제>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 략)	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	②---------- 부위원장과 --------.
제6조(간사)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	제6조(부위원장) ①---- 부위원장 ----.
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.	②부위원장은 ----------.
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	③---------- 부위원장이 ----------.

붙임 관련 법령

▣ 지방자치법 [시행 2022. 1. 13.]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